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51호)

○ 2018. 12. 04.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 11. 20.

다. 상 정 일 자 : 2018. 12. 0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 서초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가칭)는 다자녀, 맞벌이가구 등 방과후 돌봄 수요가 높은 방배권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2018년 12월 개소 예정임.
-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심경석)

1) 동의안 제출 개요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제8호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서초구의 경우 2007년 서초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구립이 아닌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금번에 최초로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대표자	설치일	정원	주 소
1	서초지역아동센터	한광수	07.10.12	35	방배천로8길 35-3 2층(방배2동)
2	큰사랑공부방	정일오	08.4.18	35	방배로13길 29, 2층(방배1동)
3	점프문화센터	김현기	08.4.18	19	언남12길8, 1층(양재2동)
4	여의칸 지역아동센터	김계순	11.3.17	19	서초대로53, 2층(방배4동)
5	강남지역아동센터	강태원	17.1.4	19	강남대로79길 52-5, 4층(반포1동)
6	하나복지 지역아동센터	신예순	16.9.2	19	방배천로18길 20, 4층(방배2동)
7	우면지역아동센터	이현재	17.5.4	25	태봉로68, 401호(양재1동)

-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배권역에 방배동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2)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본 동의안은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함.
 - 위탁기간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지역 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기능 또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방과후 돌봄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017년도 자체 지도점검 결과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 관리 부적정, 회계서류 작성 미비 등 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2014년 경기도청 감사관에서 관내 지역아동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아동급식 보조금 부당청구, 아동급식 보조금 시설장 사적 사용, 운영비 보조금으로 협회비· 자동차세 등 부당 지출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향후 우리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12월 개원예정인데 준비는 다 되었는지? 또한 50평 정도인데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 현재 리모델링 중이며 완료단계중에 있으며, 30명 정원임.

질>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처음 개소되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답>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사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